

# 무배당 3대질병연금전환특약(즉시형)

##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조 [ 목적 ]

제 2조 [ 용어의 정의 ]

##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 3조 [ “암”, “기타피부암”, “중증갑상선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제 4조 [ “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제 5조 [ “허혈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제 6조 [ 보험금의 지급사유 ]

제 7조 [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제 8조 [ 보험금의 청구 ]

제 9조 [ 보험금의 지급절차 ]

제10조 [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제11조 [ 보험수익자의 지정 ]

##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12조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제13조 [ 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

제14조 [ 특약의 소멸 ]

##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15조 [ 특약 보험료의 납입 ]

## 제5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16조 [ 계약자의 임의해지 ]

제17조 [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 제6관 기타사항

제18조 [ 전환전 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별표2]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

[별표3] 뇌혈관질환 분류표

[별표4] 허혈심장질환 분류표

[별표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 무배당 3대질병연금전환특약(즉시형)

##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제 1조 [ 목적 ]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전환전 계약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기타 급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금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 제 2조 [ 용어의 정의 ]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다. 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 라.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마. 전환전 계약 : 주계약을 말하며, 부가된 특약 중 함께 전환하는 특약을 포함합니다. 또한, 전환전 계약을 감액하여 전환하는 경우에는 감액된 부분을 말합니다.

####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 가. 중요한 사항 :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의 승낙 여부나 계약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 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국민의 보건의료 복지행정의 수행과 의학연구를 위해 한 국민의 질병 및 사인에 대하여 의무기록자료 및 사망원인 통계조사(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등의 표준 통계를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 ICD를 기초로 그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입니다.

####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

① 이 약관에 따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기준으로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또는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이후 피보험자에게 질병이 진단된 당시 또는 재해가 발생한 당시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된 경우는 개정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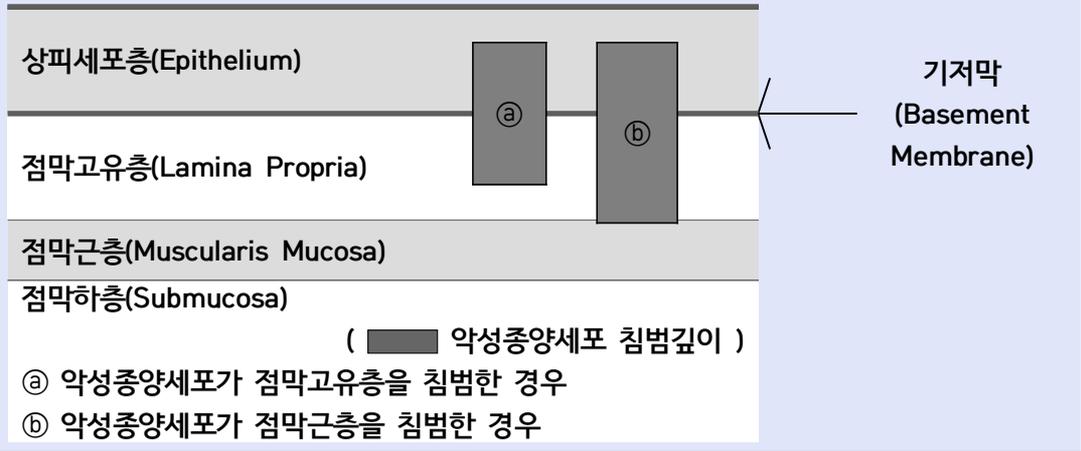


## 제2관 보험금의 지급

### 제3조 [ "암", "기타피부암", "중증갑상선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따라서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별표2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제6항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 및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그러나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 중 제4항에서 정한 “중증갑상선암”은 “암”에 포함합니다.
- ② 이 특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약에 있어서 “중증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수질성암(Medullary carcinoma)’ 또는 ‘역형성암(미분화암, Anaplastic carcinoma)’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이 특약에 있어서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이라 함은 “갑상선암” 중에서 제4항에서 정한 “중증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⑥ 이 특약에 있어서 “대장점막내암”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장(맹장, 충수, 결장, 직장을 말하며, 이하 “대장”이라 합니다.)의 악성신생물(C18~C20)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대장의 상피세포층(Epithelium)에서 발생한 악성종양세포가 기저막(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을 침범하였으나 점막하층(Submucosa)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의 질병을 말합니다.
- ⑦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암”, “기타피부암”, “중증갑상선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의 진단확정을 내려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 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⑧ 제7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중증갑상선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대장점막내암 예시>**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최초 발생한 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예시1>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예시2>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예시3>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제8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예시1>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예시2>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 4조 [ “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②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가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을 내려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및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 용어해설

###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의원
- 나. 치과의원
-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신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병원
- 나. 치과병원
- 다. 한방병원
-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마. 정신병원
- 바. 종합병원

### [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

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3.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②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 제 5조 [ “허혈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허혈심장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허혈심장질환 분류표”(별표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가 “허혈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을 내려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검사,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허혈심장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 제 6조 [ 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기준표”(별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생존연금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뇌혈관질환”, “허혈심장질환” (이하 “3대질병”이라 합니다) 진단확정 될 때(다만, 최초 1회 한): 3대질병연금(생존연금의 200%를 지급하며, 진단확정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보험계약 해당일로부터 10년 또는 20년 확정지급)

### 제 7조 [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3대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하여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3대질병연금을 지급합니다. 그러



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⑧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 8조 [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진단서(병명기입) 등)
3. 피보험자의 주민등록등본(연금의 경우)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 9조 [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8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설명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이 2024년 10월 8일(화)인 경우 10/9(수, 한글날), 10/12(토), 10/13(일)은 회사의 영업일이 아니므로, 10/8(화)부터 3영업일인 10/14(월)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②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5 참조)과 같이 계산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다만, 대상기관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 3. 수사기관의 조사

####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늦어지는 경우

6. 제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8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설명

‘정당한 사유’란 사회통념상 그 의무나 책임 등을 이행할 수 없을만한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나 책임 등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 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 용어해설

##### [ 보험금 가지급제도 ]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피보험자가 당장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해주는 임시 급부금입니다.

### 제10조 [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① 피보험자가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생존연금 보증지급기간 동안 잔여 보증지급기간의 연금을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3대질병연금을 지급 받을 때 잔여지급기간의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용어해설

### [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해약환급금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산출 기초율을 사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 [ 공시이율 ]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한 간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 제11조 [ 보험수익자의 지정 ]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 제12조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체결 후 계약자가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자가 신청한 전환일로 합니다. 이 경우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전환전 계약은 더는 효력이 없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환 신청일 이후에 전환일시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회사가 전환일시금을 받은 날로 합니다.
- ④ 계약자는 특약을 체결할 때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3대질병연금의 확정지급기간(10년, 20년)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생존연금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 10년 ~ 40년, 100세 보증
3대질병연금	10년 또는 20년 확정

- ⑤ 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이 특약으로 전환하기 이전에 3대질병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제13조 [ 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전환전 계약의 피보험자(전환전 계약이 2명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인 경우에는 전환전 계약의 피보험자 또는 계약자 중 특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1명)로 합니다. 다만, 전환전 계약의 소멸에 준하는 사유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전 계약의 보험수익자로 합니다.

#### 제14조 [ 특약의 소멸 ]

①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및 연금지급기간 종료 등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② 제1항 및 제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용어해설

##### [ 실종선고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 제4관 보험료의 납입

#### 제15조 [ 특약 보험료의 납입 ]

이 특약은 전환전 계약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기타 급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환후 특약의 일시납 보험료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이하 “전환일시금”이라 합니다)

### 제5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 제16조 [ 계약자의 임의해지 ]

계약자는 전환전계약이 이 특약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제17조 [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①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합니다.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전환전 계약의 계약일부터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까지의 기간과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의 경과기간을 더하여 5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공시기준이율에 조정률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합니다.
- ③ 제1항의 공시이율은 동종 계정에 있는 동종상품(제1항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용되는 상품)의 배당보험 공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합니다.
- ④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용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합니다.
- ⑤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용어해설**

**[ 최저보증이율 ]**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 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 운용자산이익률 ]**  
 운용자산이익률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계산된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 외부지표금리 ]**  
 외부지표금리는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국고채, 회사채, 통화안정증권, 양도성예금증서 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 최저보증이율 예시 ]**

- 전환전 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  
 전환전 계약일 : 2017년 1월 1일, 현재 : 2021년 1월 1일, 공시이율 0.5%  
 계약자적립액은 공시이율(0.5%)이 아닌 최저보증이율(1.25%)로 적용합니다.
- 전환전 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5년 초과 10년 이하인 경우  
 전환전 계약일 : 2017년 1월 1일, 현재 : 2025년 1월 1일, 공시이율 0.5%  
 계약자적립액은 공시이율(0.5%)이 아닌 최저보증이율(1.0%)로 적용합니다.
- 전환전 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10년 초과인 경우  
 전환전 계약일 : 2017년 1월 1일, 현재 : 2032년 1월 1일, 공시이율 0.1%  
 계약자적립액은 공시이율(0.1%)이 아닌 최저보증이율(0.5%)로 적용합니다.

5년 이하의 경과기간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경과기간	10년 초과 경과기간
2017/1/1	2022/1/1	2027/1/1
최저보증이율 1.25%	최저보증이율 1.0%	최저보증이율 0.5%

**[ 공시이율의 공시 ]**  
 이 보험에 적용되는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abllife.co.kr](http://www.abllife.co.kr))의 '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6관 기타사항

### 제18조 [ 전환전 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

- 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환전 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가입과 관련하여 전환 시점에 전환전 계약 약관에서 정하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전환전 계약의 약관 중 『보험계약대출』 및 『계약내용의 변경 등』 등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별표1)

## 보험금 지급기준표

### ■ 생존연금(제6조 제1호)

지급사유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지 급 금 액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 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한 연금 연액 (보증지급기간 : 10 ~ 40년/100세)

### ■ 3대질병연금(제6조 제2호)

지급사유	보험기간(최대 100세 까지)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 후에 "3대질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한)
지급금액	생존연금액의 200% 지급(진단확정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보험계약 해당일로부터 10년 또는 20년 확정지급)

- (주) 1. 연금연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연액도 변경됩  
니다. 또한,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 연금연액은 직  
전 연금연액과 동일하나,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한번이라도 변경된 경우 해당 연도의 연금연  
액은 과거 '해당 연도와 동일한 공시이율(또는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된 연도'의 연금연액과 차  
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연금연액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연액에 부과되는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하  
여 계산됩니다.
3.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전환전 계약의 계약일부부터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까지의 기간과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부부터의 경과기간을 더하여 5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최저한도로 적  
용합니다.
4. 연금연액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5. 생존연금의 경우 보증지급기간(10 ~ 40년 또는 100세)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  
급기간(10 ~ 40년 또는 100세) 동안 지급되지 않은 연금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합니다. 다  
만, 보증지급기간 동안 지급된 연금총액은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 보다 적을 수 있습니  
다.
6. 생존연금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동안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잔여 보증지급기간의 연금을 산출  
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7. 피보험자가 생존할 때 생존연금 보증지급기간 동안 잔여 보증지급기간의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8. 3대질병연금의 지급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미지급된 연금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  
합니다.
9. 피보험자가 3대질병연금을 지급 받을 때 잔여지급기간의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  
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10. 3대질병연금의 경우 3대질병 중 최초 1회한에 한하여 지급하며 중복지급하지 않습니다.
11. 3대질병연금의 암보장개시일은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말하며,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

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별표2)

##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약관에 규정하는 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암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 악성신생물	분류번호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C00-C14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C15-C26
3. 호흡기 및 흉곽내 기관의 악성신생물	C30-C39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C40-C41
5. 피부의 악성흑색종	C43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C45-C49
7. 유방의 악성신생물	C50
8.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51-C58
9.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60-C63
10. 요로의 악성신생물	C64-C68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분의 악성신생물	C69-C72
12. 부신의 악성신생물	C74
13.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구조물의 악성신생물	C75
14.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C76-C80
15.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C81-C96
16.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	C97
17. 진성 적혈구 증가증	D45
18.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6
19.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1
20.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3
21. 골수섬유증	D47.4
22.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D47.5

- (주) 1.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사인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갑상선의 악성신생물(분류번호 C73)과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분류번호 C44)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갑상선의 악성신생물(분류번호 C73) 중 제 3조(“암”, “기타피부암”, “중증갑상선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제4항에서 정한 중증갑상선암은 “암”에 포함합니다.
4.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최초 발생한 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5.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C15~C26) 중 제 3조(“암”, “기타피부암”, “중증갑상선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6항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별표3)

### 뇌혈관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뇌혈관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뇌혈관질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분류항목	분류번호
1. 거미막하출혈	I60
2. 뇌내출혈	I61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2
4. 뇌경색증	I63
5.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4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5
7.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8. 기타 뇌혈관질환	I67
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8
10.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I69

- (주) 1.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사인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별표4)

### 허혈심장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허혈심장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허혈심장질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분류항목	분류번호
1. 협심증	I20
2. 급성 심근경색증	I21
3. 후속 심근경색증	I22
4.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3
5.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I24
6. 만성 허혈심장병	I25

- (주) 1.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사인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5)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9조 제2항 관련)

구분	적립기간		지급이자
제1회 3대질병연금 (제6조 제2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생존연금 및 제2회 이후 3대질병연금 (제6조 제1호, 제2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보험기간 만기일(다만, 생존연금의 경우 이 특약이 더는 효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게 된 날) 이내	공시이율
		보험기간 만기일(다만, 생존연금의 경우 이 특약이 더는 효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게 된 날) 이후	1년 이내 : 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 공시이율의 40%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생존연금 및 제2회 이후 3대질병연금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2. 상기 공시이율은 제17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1항에서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3.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며, 회사가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할 때에는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내에서만 상기 이자를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보험기간 만기일(다만, 생존연금의 경우 이 특약이 더는 효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게 된 날) 이전이라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부터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4.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5. 가산이율 적용 시 제9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 가산이율 적용 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설명**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란, 공정하고 정확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확인 등이 필요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인정하는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7. 회사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표의 ‘청구일’은 회사의 해지 의사표시(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포함)가 계약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도달한 날로 봅니다.